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가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공고 알림

1. 관련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별표 2의4]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2. 우리 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20/'21년 동절기 및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에서 지속 확인되는 미흡사항을 보완하고자, 아래(붙임)과 같이 가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을 공고하였습니다.

3. 관계기관과 지자체, 관련 단체 등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예방을 위해 가금농장에서 방역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집중 지도·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역본부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를 통해 전국 가금농장에 문자 발송, 지자체는 가금농장 전담관을 통해 가금농장에 육성 등으로 전달, 단체·농협 등은 계열화사업자, 소속 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에 홍보 실시

- 아 래 -

□ 주요 내용(세부 내용은 붙임 참조)

○ 가금농장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 가금의 소유자 등은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한 후(1단계 소독),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 소독)할 것

- 가금의 소유자 등은 소독시설이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매일 확인하고, 소독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즉시 정비·보수할 것

○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금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 통제

- 가금의 소유자 등은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 등으로 차량과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할 것

○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 금지**

- 가금의 소유자 등은 전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축사의 뒷문(쪽문) 등으로 축사에 출입하지 않을 것

* 부득이하게 출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출입문에 신발소독조와 손 소독설비(또는 소독제), 축사 전용 신발을 구비·운영할 것

- 가금의 소유자 등은 전실 청소·소독 등 전실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축사에 출입 시 손 소독을 실시하고 출입할 것

□ **시행기간**

○ '21.11.22. ~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시 까지(필요 시 연장*)

* 국내 야생조류 및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연장

□ **위반 시 처분**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보상금 감액

붙임 1. (공고 제2021-398)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할 출입통제 및 소독 등 추가 방역기준 1부.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검역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축산경영과장, 축산환경자원과장, 방역정책과장, 구제역방역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방역감시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역학조사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장), 농촌진흥청장(재해대응과장), 행정안전부장관(가축질병재난대응과장), 환경부장관(생물다양성과장), 환경부장관(토양지하수과장), 국방부장관(재난관리지원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정책과장), 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보건연구과장),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질병대응팀장),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질병연구팀장), 국립생물자원관장(국가철새연구센터운영팀장), 질병관리청장(신종감염병대응과장), 국립축산과학원장(가축질병방역과장), 경찰청장(치안상황관리관), 서울특별시장(동물보호과장), 부산광역시장(농축산유통과장), 대구광역시장(농산유통과장), 인천광역시장(농축산유통과장), 광주광역시장(생명농업과장), 대전광역시장(농생명정책과장), 울산광역시장(농축산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동물위생방역과장), 경기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강원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충청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충청남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전라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전라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동물방역과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대한수의사회, 대한양계협회장, (사)한국육계협회,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 (사)한국오리협회, (사)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 한국사료협회, (사)한국단미사료협회, 사단법인 한국축산물처리협회, (사)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장, 가축유기질비료협동조합장, 농협경제지주 친환경방역부

주무관 **박제민** 사무관 **김석재**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 전결 2021.11.17. **홍기성**

협조자

시행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10589 (2021. 11. 17.) 접수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 http://www.mafra.go.kr

전화번호 044-201-2556 팩스번호 044-863-9210 / parkjemin@korea.kr / 대국민 공개